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'92. . . 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의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액 인상을 위한
- 내부부장관으로 부터 조례개정안 준칙시달(지기 01300-718 '92. 9.25)

주요골자

- 의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액 인상

구 분	현 행		개 정		비 고
	전문의, 가급	일반의, 나급	전문의, 가급	일반의, 나급	
일반직 의 사 공무원	554,000원	471,000원	월 609,000원	월 518,000원	10%인상
전 임 전문직 공무원	860,000원 ~ 880,000원	565,000원 ~ 585,000원	월 989,000원 ~ 1,012,000원	월 650,000원 ~ 673,000원	15%인상 *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

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, 전임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” 을 “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” 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일반직 의사,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” 를 “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” 로 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일반직 의사” 를 “일반직공무원인 의사” 로 한다.

제2조제2호중 “전임전문직 의사” 를 “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” 로 한다.

[별표 1]과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